

#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2년 12월 2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1. 회 부 경 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2. 12. 20. 평창군수(재무과장)
- 나. 회부일자 : 2002년 12월 20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년 12월 23일)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재무과장 김일래)

### 가. 제안이유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적용을 명확히 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제감면기한 연장 및 관련 법령이 개정에 따른 해당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추징조항(안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안 제6조)
-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적용규정 정비(안 제9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이전하는 법인(공장 등)에 대한 감면적용기한 연장

(안 제26조제12항)

-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조문 정비(안 제14조제1항, 제18조)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박태영)

- 현행 제2조 및 제3조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감면은 용도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에 대하여만 감면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에서 제한하였으나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용도와 관계없이 감면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6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로 제한하였으나 포괄적인 감면의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였으며

제9조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50%경감은 구체화하여 명시 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 및 제18조에 대한 규정된 관련법인 법률제명이 변동이 있고 추가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였으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 권역안에서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매각하고자 하고 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 또는 본사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 시한을 2002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는 장애인·노인 복지시책, 지정문화재 보호정책, 과밀억제 정책등 국가시행에 부응하는 개정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	답변요지
○ 9조를 개정하는 이유?	○ 재산세는 세액에 포함되는데 과세표준액을 세액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함.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붙 임 : 평창군새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부.